

## 신문방송국 운영규정(4-1-2)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신문방송국은 건양대학교 신문방송국(이하 “신문방송국”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신문방송국은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건전한 여론조성 및 새로운 대학문화의 창달에 노력함으로써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신문방송국은 신문의 발행, 교내방송, 학교 행사의 지원, 기타 학술 및 문화 활동의 진작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구성) 신문방송국은 제3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문발행을 담당하는 학보사와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국으로 구성한다.

### 제2장 기 구

제5조(기구) 신문방송국에는 국장과 간사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신문방송국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협력부총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신문방송국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8.07.16).
2. 간사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신문방송국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장 재 정

제6조(재정) 신문방송국의 재정은 교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예산 및 사업계획) 신문방송국장은 신문방송국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2월초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년도) 신문방송국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4장 학 보 사

제9조(구성) 학보사는 발행인, 편집인, 편집위원, 학생기자로 구성한다.

제10조(발행인 및 편집인) 발행인 및 편집인은 총장이 이를 겸한다.

제11조(편집위원) ① 신문발행을 위한 편집계획의 수립 및 논설집필 등을 위하여 약간 명의

편집위원을 둔다.

② 편집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신문방송국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2조(학생기자) ① 학보사는 신문발간을 위하여 편집부장과 약간 명의 부장, 기자를 둔다.

② 학생기자는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9. 1. 14)

③ 학생기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문방송국장이 선발한다.

1. 편집부장은 부장급의 기자 중에서 선발하고 신문제작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학생기자를 대표한다.
2. 각 부장은 정기자 중에서 선발한다.
3. 정기자는 1개학기 이상 활동한 수습기자 중에서 선발한다.
4. 수습기자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기자는 신문방송국장이 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본교 학칙을 위반한 자.
2.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3. 학보사 지휘체통의 명령에 불복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13조(학보발행) ① 학보는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제작하되, 학기 중 매월 초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1. 14)

② 학보는 발행 전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문방송국장의 허가가 있어야 인쇄할 수 있다.(개정 2019. 1. 14)

## 제5장 방 송 국

제14조(구성) 방송국의 대외 호출부호는 K.Y.B.S(KonYang Broadcasting Station)로 하며, 제작부, 기술부, 보도부, 아나운서부로 구성한다.

제15조(방송국원) ① 방송국은 방송을 위하여 방송부장과 각 부서의 국원을 둘 수 있다.

② 방송국원은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9. 1. 14)

③ 방송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문방송국장이 선발한다.

1. 방송부장은 부장급의 국원 중에서 선발하고 방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학생국원을 대표한다.
2. 각 부장은 정 국원 중에서 선발한다.
3. 정국원은 1개 학기 이상 활동한 수습국원 중에서 선발한다.
4. 수습국원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국원은 신문방송국장이 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본교 학칙을 위반한 자.
2.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3. 방송국 지휘체통의 명령에 불복하여 국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16조(운영위원) ① 방송국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위하여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② 운영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신문방송국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학생국원의 임무)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작부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기술부 : 방송기술에 관한 사항.
3. 보도부 : 뉴스, 공지사항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
4. 아나운서부 : 방송에 관한 사항.

제18조(방송) ① 모든 방송은 신문방송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송은 정규방송, 임시방송 및 특집방송으로 구분하며 정규방송은 방송계획(학기별, 월별, 주별)을 제출해야 한다.

③ 방송은 학기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송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계절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1. 아침방송 : 08:20 - 08:50
2. 저녁방송 : 17:20 - 17:50

④ 방송음량은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9조(방송방법) 방송은 녹음방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문방송국장이 승인한 사항은 생방송할 수 있다.

제20조(프로그램제작) 방송녹음은 1주일 전에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1. 14)

제21조(방송일지) 방송국은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금지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활동은 금지한다.

1. 학칙에 위배되는 사항.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3. 정치적인 사항.
4. 교권 및 교직원 신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및 재단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항.
6. 신문방송국장의 승인이 없는 사항.

## 제6장 기 타

제2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 및 신문방송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1998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07.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범위) 직제규정 제25조(타 규정 적용) 및 전략기획18-0656(2018.07.16.) ‘직제 변경에 따른 규정 내 직제명칭 일괄 개정 계획(안) 보고’ 에 따른 개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5조제1호 중 “학생처장” 을 “대외협력부총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